

생손보겸영금지에 관한 소고*

고 은 희**

<차례> _____

I. 서 론	IV.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해외 입법례
II. 금융업 겸업과 생손보겸영금지원칙	V. 보험회사 지배구조와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의 관계
III. 우리나라의 생손보겸영금지원칙	VI. 결 론

주제어 : 생손보겸영금지원칙, 금융업 겸업, 금융업에 대한 규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업무 영역, 금융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국문초록>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인수하고 그 보험계약을 이행하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한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업을 수행하는 금융업 겸업만큼이나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담보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을 인수함에 따른 리스크도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한꺼번에 인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보다 리스크 전이, 그리고 그로 인한 보험회사의 파산 가능성 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금지 원칙(이하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이라고 한다)이 도출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시부터 보험업법 제10조에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명시하였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정책적 필요와 생손보겸계의 합의를 통해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였고, 이러한 예외를 더 넓혀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하나의 보험회사 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지주회사 내에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은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주회사를 통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융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생손보겸영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주회사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입법적 개선

* 본 논문은 2020년 5월 22일 개최된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사회를 맡아 주셨던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정 석좌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셨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장근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변호사,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20.06.07), 심사개시일(2020.06.11), 게재확정일(2020.06.25)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이론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생존보겸영금지원칙에 관하여 제기되는 논점을 정리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 서론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간 경쟁은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대다수 국가는 금융규제와 금융회사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자국 금융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금융업 융합·통합·겸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이 등장하였으며,¹⁾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인수 합병을 통해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²⁾ 금융업 겸업은 종합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금융업 별 경쟁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³⁾ 그러나 동시에 겸업을 통하여 인수한 금융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금융업 겸업주의와 전업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왔지만, 그 어느 쪽이 확실히 낫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그 이유이다.⁴⁾

금융업 융합·겸업의 문제를 보험회사로 국한해서 논해 보자. 먼저, 보험은 인간이 생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모인 보험료는 대출, 주식, 채권 투자 등을 통한 산업자금으로 이용되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손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⁵⁾ 이러한 보험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보험회사

1)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 15쪽.

2) 강경훈/여은정, “금융권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금융연구」 제2014-3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2쪽; 정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1쪽.

3) 손상호, “금주의 논란 :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제15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1., 8쪽.

4) 송상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BOK 이슈노트」 No. 2012-5, 한국은행, 2012, 8쪽; 지호준/정교설, “금융겸업주의는 전업주의보다 우월한가”, 「경영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학회, 1998. 5., 516쪽.

는 보험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가는 보험회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⁵⁾ 보험회사는 고유업무인 보험업에 대하여 보험종목별로 허가를 받는다. 보험종목은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해당 금융회사 본체 내에서 겸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경우는 특히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하나의 보험회사 본체 내에서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시부터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하였다(보험업법 제10조). 2003년에는 제3보험업을 신설하면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계약을 그 보험종목으로 정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 그 후에도 정책적으로 생손보 겸영이 가능한 보험계약이 허용되어 왔다.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기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도 서로의 보험종목을 겸영하거나 융합하려는 경향이 계속되는 있다는 점에서 생손보겸영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생손보겸영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절충안으로 지주회사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금융업 겸업과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관한 이론과 해외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개정의견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금융업 겸업과 생손보겸영금지원칙

1. 금융업의 의의와 규제

(1) 금융업의 의의

금융업에 관한 총괄적인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적인 금융

5)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27-28쪽.

6)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개정 제2판, 도서출판 두남, 2015, 12쪽.

업 관련 법령은 해당 법령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금융업을 정의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금융업관련법’으로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과 같은 개별 금융업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행위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도 포함한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이를 종합하여보면, 금융업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 또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금융업의 핵심업무인 고유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두고 그러한 개별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내부에서 겸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전업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는 해당 금융업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택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규제된다.⁷⁾

(2)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가 정해져야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융회사가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와 연결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정해지게 되면 해당 업무영역을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등의 기준이 정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회사 업무영역 설정과 분류, 업무영역의 확대, 금융업 융합과 겸업화 경향은, 금융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와 연결되므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와 재무건전성 규제를 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즉,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 금융회사 업무영역 규제 및 건전성 규제는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다.⁸⁾

7) 강병호/김대식/박경서, 「금융기관론」(제21개정판), 박영사, 2016. 327-329쪽, 정지만, 앞의 논문, 7쪽.

8) 성희환,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정책학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901-902쪽.

2. 금융업 겸업의 의의와 겸업 형태

(1) 금융업 겸업의 의의

금융업 겸업이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의 다양한 금융업을 상호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⁹⁾ '겸업주의 금융제도(universal banking)'라고도 한다. 반면에, 하나의 금융기관이 여러 금융업을 함께 수행할 수 없고 특정한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것을 전업주의 금융제도(sound banking 또는 specialized banking)라고 한다.¹⁰⁾

금융업 겸업을 영위하여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이다. 여러 업무를 따로 수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취급하면 회사의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한 업무 분야에서 축적된 정보를 다른 부분에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의 탐색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¹¹⁾

반면에 겸업 금융회사는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에 비해 규모가 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만약 그러한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금융제도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도 크다.¹²⁾ 대형 금융회사는 대마불

9) 이러한 금융업 겸업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 소속으로 겸업할 경우는 겸업되는 금융회사별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이 된다. 반면에 하나의 금융회사가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수행하는 사내겸영 또는 내부겸영 방식은 해당 금융업별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법인격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로 구별된다. 다만, 금융업 겸업형태는 법인격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겸영하는 금융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금융업 사이에서 위험전이, 위험차단 문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10) 손상호, 앞의 논문, 4, 46쪽.

11) 한국은행, 앞의 책, 12쪽.

12) 한국은행, 앞의 책, 12쪽, 가령, 은행이 겸영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업종을 지배하거나 은행 자신의 손실을 다른 업종으로부터 보전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권한을 남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다. 또한, 은행이 증권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자금이 산업자금보다 투기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증권업무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은행경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고, 지급결제제도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겸영을 통하여 투기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은행의 주주가 향유하는 반면에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파산할 경우 그 손실은 채권자인 예금주가 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은행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계열 증권회사가 보유한 불량증권을 대출고객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하거나 불량대출기업의 대출을 상환받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게 증권을 발행하게 하여 그 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일 수 있다(강병호/김대식/박경서, 위의 책, 93-94쪽).

사(too-big-to-fail) 등을 통하여 강하게 위험 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정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겸업 형태

금융업 겸업의 형태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어떻게 영위하는지에 따라, 내부겸영, 모회사와 지주회사, 상호진출과 업무제휴 형태로 나뉜다.¹³⁾ 내부겸영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내부에서 고유업무 외에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의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¹⁴⁾ 이를 직접겸영 또는 사내겸영이라고도 한다.¹⁵⁾ 이러한 내부겸영 방식을 취하면 하나의 법인격 안에서 복수의 금융업무가 영위되므로 복합적인 금융상품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금융업 관련 정보가 하나의 회사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따라서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회사에 의한 겸영방식은 하나의 금융회사가 자신과 다른 금융업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보유하는 형태이다. 모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융업을 자회사가 수행함으로써 겸업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각각 해당되는 금융업 법령과 규제가 적용되고, 각 회사가 감독대상이 된다.¹⁶⁾ 각 금융업이 별도의 법인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내부겸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위험전이를 방지할 수 있고, 모회사가 지배권을 발휘하고 자회사가 협조하는 체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지주회사 방식은 지주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을 말한다.¹⁷⁾

13) 송상진, 앞의 논문, 9쪽,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 앞의 논문, 72-73쪽, 지광은, 「보험지주회사의 범위 : 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12, 30-34쪽, 자본을 매개로 하지 않는 업무제휴방식, 임원겸임방식, 자본을 매개로 한 모회사와 자회사 설립, 공동으로 자회사 설립, 지주회사 설립방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14) 정지만, 앞의 논문, 6쪽.

15)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하나의 금융회사가 은행업과 증권업을 내부겸영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영국,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직접겸영을 택했다(김수진, “주요 통합감독기구의 통합감독현황과 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 운용사례”, 「금융감독제도 일반」, 금융감독원, 2013, 9쪽).

16) 정지만, 앞의 논문, 11-12쪽.

17) 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 V. 2. 참조.

(3)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내부겸영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각 금융회사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를 금융감독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다. 2000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본질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금융회사가 조직 또는 지배구조의 결합을 통한 금융겸업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10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8월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방키슈랑스제도가 도입되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방키슈랑스제도 도입과 더불어 보험설계사 1사 전속주의를 완화하였고, 한 명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모집 제도가 신설되어 2008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09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을 규정한 각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3. 금융업 겸업과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의 관계

은행, 증권업, 보험업 등 개별 금융업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해당 금융업 수행에 따른 위험에 필연적으로 노출되는데, 금융업 겸업이 수행되면서는 겸업으로 인한 위험까지 해당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업의 겸업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성이 다른 금융업을 겸영함으로써 인하여, 해당 업무에 내재된 문제가 증폭되거나 그 위험이 다른 금융업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각 금융업 간, 또는 해당 금융업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업 사이에는 반드시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하며, 고유한 금융업 영역은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금융업 겸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 겸업을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어 수익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18) 장경환(연구책임자)외 7인, “보험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151쪽.

개별 금융업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금융업은 하나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내에서 그 외에 다른 금융업을 겸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그러하다. 즉,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같은 보험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겸영하는 것은 다른 금융업 사이에서 겸영하는 것만큼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 겸업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수 년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겸영에 따른 금융위기 유발 여부,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생존보겸영금지원칙에도 시사점을 갖는데, 서로 다른 리스크를 가진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하나의 보험회사가 겸영할 경우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위험전이 차단, 각 보험업의 이해상충문제, 각 보험의 계약자 보호, 보험회사가 갖추어야 할 건전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Ⅲ. 우리나라의 생존보겸영금지원칙

1. 법적 근거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보험업법 제10조에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하고 있다.¹⁹⁾

2. 이론적 근거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한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는 첫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인수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소액의 정액보험을 통하여 인수하므로 손해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9) 보험회사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보험업법 제10조를 위반한 보험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보험업법 제209조 제4항 제1호), 보험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보험업법 제134조).

소규모이고 발생여부, 발생의 예측가능여부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통계적 예측가능성이 높으며, 보험기간이 장기이다. 반면에 손해보험은 재산상 손해를 인수하고, 인수하는 대상이 자연재해, 화재 등 대규모이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계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추정을 더한 손해율에 따르며, 보험기간이 단기이다. 종합하여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따라 인수대상 또는 인수되는 위험의 종류나 위험의 크기 또는 규모, 통계적 기초 등이 다르다.²⁰⁾ 이러한 점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일한 사업자가 영위하면 손해보험업의 부실이 생명보험업에 영향을 미쳐서 부실이 전염될 위험(contagion risk)이 커진다.²¹⁾ 특히, 생명보험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보험료로 손해보험업의 손실을 메우게 된다면, 결국 생명보험계약자 이익보호에 반하게 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²²⁾

둘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가 각각 다르므로, 보험업은 각 리스크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보험리스크²³⁾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를 부담하고²⁴⁾ 이러한 각

20) 이러한 점에서 생명보험회사가 몇 건을 잘못 인수해도 파산할 위험성은 낮지만, 손해보험회사는 파산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손해보험회사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이유로 파산하기도 한다(성대규/안종민, 앞의 책, 33쪽).

21) 김선정, “보험업법상 경영금지원칙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254쪽.

22) 장경환, 앞의 보고서, 32쪽.

23) 보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통칭한다. 다만, 나라별로 보험리스크가 무엇인지 다르게 정한다. 가령, EU의 제2지급 여력지침에서는 보험리스크를 인수리스크(underwriting risk)로 정의하고, 생명보험 하위에 사망리스크, 장수리스크, 장애·질병리스크, 해약리스크, 사업비리스크, 개정(revision)리스크, 대재해리스크를 두고, 손해보험은 보험료리스크, 준비금리스크, 해약리스크, 대재해리스크로 분류하며, 예정이율에 따른 리스크는 보험리스크가 아닌 시장리스크에서 다룬다. 우리나라는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된 예정 손해율과 실제 발생 손해율 차이로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인 보험가격리스크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미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실제로 지급할 보험금에 비하여 부족할 위험에 대비하는 준비금리스크로 보험리스크를 구분한다(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앞의 책, 39-40쪽).

24) 금리리스크란, 금리변동에 따른 순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의미하고, 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 금리연동형상품의 비중이 결정요인이다. 신용리스크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발생리스크를 말하고, 신용등급, 부도율, 담보, 보증 등으로 신용을 보강한 내역 등이 결정요인이다. 시장리스크란, 시장가격(주가, 이자율, 환율 등)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변화에 따른 손실발생리스크로 분산투자의 적정성, 변액보험 비중이 결정요인이다.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인력·시스템, 외부 사건 등에 의한 손실발

리스크에 따라 개별적인 위험액을 측정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제1항 제1호). 생명보험회사에는 전통적으로 시장리스크가 가장 큰 사업리스크로 판단된 반면에, 손해보험회사는 보험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²⁵⁾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보험회사가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융규제 관점에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EU에서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02년 보험회사 파산을 조사한 셰르마(Sharma) 보고서의 시사점이 크다. 보고서에서는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운 생존보겸영기업의 경우 효율적인 기업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재무와 위험인수 부분이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⁶⁾

또한,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보험기간이 긴 반면에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²⁷⁾, 자산과 부채의 평균존속기간(duration)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각 보험기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²⁸⁾

이와 같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노출된 리스크, 자산운용방법, 보험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 모든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합해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에 비해,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성이 저해되는 등 리스크가 커진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영으로 얻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에 보험계약자 이해가 상충될 여지는 매우 클 수 있다.²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보험업 경영을 도모하고 경영상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³⁰⁾

생리스크를 의미하고, 내부통제, 사고방지대책의 적정성이 결정요인이다(금감원, 위의 책, 28쪽).

25) 장경환, 앞의 보고서, 33쪽.

26) 2002년 발간된 셰르마(Sharma) 보고서는 1996년부터 2001년 동안 발생하였던 보험회사의 부실, 파산 등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케이피엠지(KPMG) 보고서와 더불어, EU 제2지급여력지침의 기초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aul Sharma,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Report, Conference of the Insurance Supervisory Servic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02, 4.4.4.

27) 자산운용위험은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등을 의미한다(한기정, 앞의 책, 121쪽).

28) 성대규/안종민, 앞의 책, 133쪽.

29) 성대규/안종민, 위의 책, 132쪽.

30) 장경환, 앞의 보고서, 33-34쪽.

3.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와 검토

(1) 보험업법 규정

보험업법 제10조 단서는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① 생명보험의 재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제1호),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제2호),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제3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제3호)을 정한다.

1)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

보험업법 제1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종목인 재보험(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을 영위할 수 있다. 재보험은 책임보험의 하나로 손해보험종목에 해당하므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재보험과 원보험은 보험료의 위험료 산정기초가 같으므로, 생명보험회사가 원보험으로 취급하는 생명보험종목과 생명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제3보험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원보험으로서 생명보험종목과 제3보험종목을 취급할 경우 이에 대한 재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

보험업법 제10조 단서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을 각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 정한다. 다만, 손해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함)의 일부나 제3보험종목만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이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없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① 연금저축계약

1) 연금저축계약의 의미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이란, 납입금이 세액공제 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이 과세되는

세제적격 연금을 의미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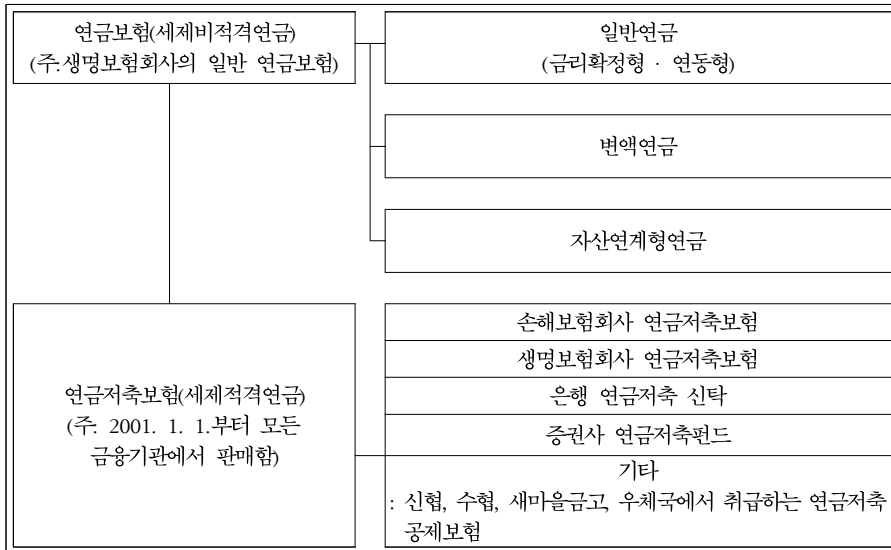
이러한 세제적격연금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을 말한다.³²⁾

연금저축계약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국민의 노후보장과 저축을 장려하고자 사회보장적 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³³⁾ 즉, 국민 대다수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므로, 금융업 중 특정된 분야만 편중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이다.

31)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판매되었던 연금저축을 말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는 폐지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퇴직연금(개인형 IRP)을 포함할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단,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5.5-3.3%)된다. 납입금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이 있었으므로, 중도해지 시에는 소득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FINE(금융소비자정보포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연금저축 개요).

32) 금융감독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8. 4. 22. 보도자료, 2쪽.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의 유형>



33) 정재웅, 「보험법 해설」, 진한엠앤비, 2017, 162쪽, 금융감독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앞의 보도자료, 5쪽.

2)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따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취급에 관한 검토

세제적격 연금보험계약과 달리,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세제비적격 일반 연금보험은 사람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생존’에 대한 급부로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³⁴⁾ 이는 보험계약자가 개인적인 수요에 따라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부여하는 세제 혜택이 없다. 즉, 세제비적격 일반 연금보험은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따라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생명보험 종목에 해당한다. 가령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도 피보험자의 생존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세제비적격인 일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종목 중 하나로 정한다.³⁵⁾

② 퇴직연금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보험계약이란, 퇴직연금의 하나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보험회사가 이용하는 퇴직연금보험계약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 제2항).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금융기관으로서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으로 적립된 금원을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보관하고 운영관리기관으로서 적립금을 운용하거나 수익한다.³⁶⁾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정) 부칙 제2조 제

34) 기본적으로 연금개시연령 이후 정기적인 지급 시기마다 생존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에 든 것이다. 연금보험은 생존보험으로서 생명보험업의 고유영역에 속하고 생존보험이 아닌 연금보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금을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만으로 어떠한 보험상품이 연금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5) 뉴욕주 보험법 제4205조, 제1113조 제a항 제2호, 영국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규제대상사업령 부칙 1(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No. 544 : SCHEDULE 1 - CONTRACTS OF INSURANCE) 제2편(Part II) 장기보험계약(Long-Term Insurance) I 생명과 연금(Life and Annuity), EU 제2지급여력지침 부칙 제2편(Annex II) 생명보험 종목(CLASSES OF LIFE INSURANCE) 제 I 호, 제2조 제3항 (a)호 (ii)목 연금보험,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4항 제1호.

3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소개”(http://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 사업자 안내”(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해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신규로 가입할 수 없고,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퇴직금제도의 일부로 보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었다.³⁷⁾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이 가입하게 되므로,³⁸⁾ 사회보장제도로써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한 종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제3보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1) 보험업 관련 법령상 질병사망보장특약의 의미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도 생존보검영 금지의 예외이다(보험업법 제10조 제3항). 손해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 제외)의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의 특약형식으로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같은 항 제2호), ③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내(같은 항 제3호)로 하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2)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따른 질병사망보장특약의 취급에 관한 검토

이와 같이 제3보험에 질병사망보장특약을 두어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정한 이유는 생존보업 영역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었다.³⁹⁾ 이에 따라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 생

3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2016. 9. 2.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fss/psn/intro/system/system2_1.jsp).

38)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39) 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8, 124쪽).

손보업계의 합의로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제3보험상품에 대한 실손을 허용하고(개인실손은 2년 후부터),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제3보험에 대한 만기제한 15년을 폐지하며 현행과 같은 질병사망특약을 같은 해 8월 30일부터 시행한 것이다(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⁴⁰⁾

질병보험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과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보험의 보장영역에서 제외된다(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보험종목(계약) 구분 기준(제1-2조의2 관련) 참조). 질병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릴 위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비, 생계비를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원활하고 빠르게 복귀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즉, 사망자체에 대한 담보는 질병보험의 목적이 아니며,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예외적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예외적으로 겸영할 수 허용된 것이지 원칙적인 질병사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질병보험은 독립된 보험영역이지만 질병사망은 질병보험의 영역이 아니며,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질병사망은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한다.⁴¹⁾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해외여행상해보험에 있어서 질병사망은 생손보겸영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특정 상품에 한해서만 허용된 것이다.⁴²⁾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을 담보할 수 있도록

40)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60년사 총론편」, 생명보험협회, 2010, 151, 162-163쪽. 당시 재정경제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대표가 합의하여「제3보험 분야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41) 뉴욕주보험법 상해·건강보험(accident and health insurance)에서, 상해·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제1113조 제a항 3호). 또한, 영국에서 일반보험(general insurance) 중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부를 포함하지 않으며, 만약 질병사망으로 인한 보험금부를 하더라도 장례비 등 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지 그 비용을 초과하는 정액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Purves, "Advice in the Matter of the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261쪽). 또한, 영국 [보험자용 건전성 기준(INSPRU 1.5.17G 제3항)] 또는 EU(제2지급여력지침 제73조 제2항 제b호)에서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만을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만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사망을 취급할 수 있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

42) 일본 보험업법에 따르면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데 대한 보험금의 지급은 생명보험에 관한 면허의 영역이며(일본보험업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3목), 손해보험업의 면허이기도 하다(일본보험업법 같은 조 제5항 제2호).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런데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4항 제2호는 '상해로 인한 사망'만을

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IV.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대한 해외 입법례

1. 개관

OECD의 2016년 보험통계(insurance statistics)에 따르면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며,⁴³⁾ 이 국가는 모두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⁴⁴⁾ 이러한 점에서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따르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중에서, 미국, EU, 일본의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을 정한 주요 입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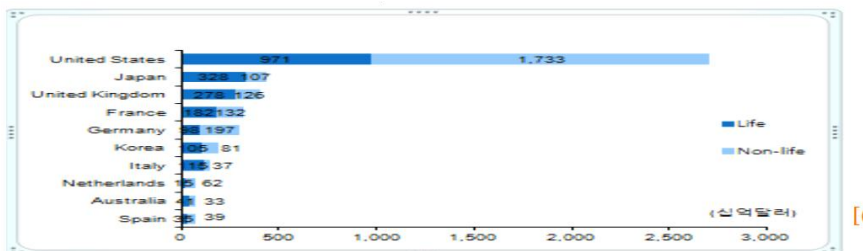
미국은 역사적인 경험(1835년 뉴욕 대화재,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등)을 통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금지하게 되었다. 초창기 보험업계는 보험회사

정하였을 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포함하지 않는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생명보험회사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여행기간 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다(일본보험업법 제3조 제5항 제3호).

이는 예전부터 해외 여행상해보험에서 질병사망도 보장해 왔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여행상품에 한하여 한정적인 범위에서 보험급부를 하게 되므로 보험계리상 폐해가 없이 때문이다(山下友信, "韓國生命保險協會の質問狀に對する回答 (Version 1)",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582-583쪽).

43) 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NSIND.

<표> OECD, Insurance Statistics>



44) OECD 수입 보험료 기준 상위 10개 국가의 생존보검영금지 법적 근거

가 인수할 보험종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자발적으로 단일한 보험종목만을 취급하였고, 그 후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보험 복수종목을 채택하였다. 손해보험회사가 하나의 보험종목 외에 다른 보험종목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다른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보험그룹을 형성하고 보험종목을 결합한 통합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인수영역을 넓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손해보험 복수종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손해보험그룹이 생명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생명보험 자회사와 생손보 결합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논의를 거쳤다.

다만, 하나의 보험회사가 모든 보험종목(all-line insurance)을 취급 가능할지 여부는,⁴⁵⁾ 보험회사의 담보력 확보 수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시 생명보험업이 우선적으로 청산될 수 있게 할 지 여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결국 모델법 제정으로 이르지 못하였다.

미국의 50개주 중 보험업 감독과 규제에 있어서 대표성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뉴욕주보험법(New York Insurance Law)은 주 내에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

	국가(연합)	법적 근거
1	미국	뉴욕주보험법 제4102조와 제4205조
2	일본	보험업법 제3조 제3항
3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규제대상사업령(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544/2001) 부칙 1
4	프랑스	보험법전 제321의1
5	독일	보험감독법 제8조 제1항의a
6	한국	보험업법 제10조
7	EC	제1생명보험지침 제13조 제1항 (1979년 시행, 2002년 폐지)
	EU	생명보험통합지침 제18조 제1항 (2002년 시행, 2016년 폐지) 제2 지급여력지침(Solvency II) 제73조 제1항 (2016년 1월 1일 시행)
8	호주	생명보험계약을 정한 1995년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5)과 손해보험 회사와 로이드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잠재적인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1973년 보험법(Insurance Act 1973)이 별도로 존재함.

45) Society of Actuaries, *Record of Society of Actuaries - All Lines Insurance Operations*, Vol. 3. No. 1., Society of Actuaries, 1977, p. 213.

사가 인수할 수 있는 보험종목을 명시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뉴욕주보험법 제1113조 제a항 제1호), 연금보험(같은 법 제1113조 제a항 제2호)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영위할 권한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같은 법 제107조 제a항 제28호). 뉴욕주에서 생명보험업을 하도록 허가받은 생명보험회사는 제28장 생명보험(같은 법 제1113조 제a항 제1호), 연금보험(같은 항 제2호), 상해·건강보험(같은 항 제3호), 법률서비스보험(같은 항 제29호), 급여보장보험(같은 항 제31호), 재보험(같은 법 제1114조),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같은 법 제1714조), 자금적립약정(같은 법 제3222조)에서 규정한 종류의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하거나 적합하게 부수되는 다른 사업을 제외한 어떤 사업도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4205조).

또한, 재산·특종 보험회사(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mpany; 이는 우리의 손해보험회사를 말한다)는 뉴욕주보험법 제28장 제4101조 제a항에 규정된 보험의 기본종목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인수할 권한을 가진 회사로(같은 법 제107조 제a항 제36호), 1개 이상의 보험 기본종목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고, 허가받은 손해보험회사는 비기본종목의 인수를 허가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4102조 제b호).

한편, 상해·건강 보험(accident and health insurance)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서비스보험, 급여보장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4205조, 제4102조 제b항, 제c항).⁴⁶⁾

3.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1979년에 시행되었던 제1생명보험지침(First Council Directive 79/267/EEC of 5 March 1979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taking 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direct life assurance) 제13조 제1항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최초로 정한 이래로, 제3생명보험지침(Third Life Insurance Directive, 92/96/EEC) 제16조, 생명보험통합지침(Directive 2002/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5 November 2002

46) 다만, 손해보험회사가 상해·건강보험을 영위하려면 화재보험, 해상·내륙해운보험, 선재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10개의 기본종목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102조 제b항 제1호).

concerning life assurance) 제18조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지급여력지침[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II)]에서도 이 원칙은 승계되어, 보험회사(insurance undertakings)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시에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제2지급여력지침 제73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생손보겸영 기업이 본점 소재지국의 결정에 따라 존치할 수 있도록 한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는 상해·질병보험의 겸영을 허용하였고, 이 경우 제74조에 따라 분리경영하도록 하였다(위 지침 제73조 제2항).

이와 같이 제2지급여력지침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한 이유는 생명보험 계약자와 손해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면 거대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손해보험업의 손실이 생명보험업에 전가될 수 있다. 이에 생명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규정의 취지는 이런 연쇄위험을 막기 위함이다.⁴⁷⁾

4. 일본

일본은 1900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래 동일한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면허와 손해보험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⁴⁸⁾ 1995년 일본보험업법 전면개정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졌고, 현재 일본보험업법(2010. 11. 19. 개정)은 보험업면허를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2가지 종류로 하고(일본보험업법 제3조 제2항), 생명보험면허와 손해보험업면허는 동일한 자가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회사를 통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상호 참여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제 또는 경쟁 정책적 관점에서 서로가 다른 업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바람직하고, 구미보험감독법에서도

47) Purves, *op. cit.*, 281쪽.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큰 규모의 상업적 위험인 거대 위험을 소비자인 대중적 위험(mass risk)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비생명보험 관점에서 탈성된다(John Lowry/Philip Rawlings/Robert Merkin,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 Hart, 2011, p. 19).

48) 이흥무,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432쪽.

자회사를 통한 참여까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회사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의 보험업 손실은 실제로 모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생존보검영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보험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가 차단될 수 있도록 여러 규제가 도입되었다.⁴⁹⁾ 이후, 1995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 자회사 방식에 의한 생존보검영 허용 등 규제완화, 공정한 사업 운영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전면 개정되어,⁵⁰⁾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자회사,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다.⁵¹⁾ 자회사를 통한 생존보 사이의 상호진입이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 후 1998년에는 ‘금융시스템개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험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 각 금융업을 다룬 법률도 함께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되었다.⁵²⁾

5. 해외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의 시사점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은 단일한 법적 주체의 생존보검영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특히 생명보험영역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적립된 기금이 그 보험업과 무관한 위험으로 위태롭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⁵³⁾ 전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에도 미국, 영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국가에서도 금융겸업화 경향에 부응하여 고객에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결합한 복합보험상품을 제공할 필요에

49) 山下友信, 앞의 자문의견, 566-571쪽.

50) 久保英也, “再構築が求められる日本の生損保兼営グループの戦略 - 規制緩和後の日本の保険グループの生産性評価 -”, 『保險學雜誌』第601号, 日本保險學會, 2008, 129-131頁.

51) 山下友信, 앞의 자문의견, 570-571쪽.

52) 맹수석,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 앞의 논문, 55-56, 60-61쪽, 이효경, “일본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4, 126-127, 143쪽. 다만, 은행과 보험회사 사이에 지주회사·자회사를 둔 실제사례는 없다고 한다(맹수석, 앞의 논문, 71쪽). 금융지주회사는 생존보 융합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유하며,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지원하고 IT투자를 추진하였다(町田七重, “生命保險と損害保險の融合化と今後の課題”, 『郵政研究所月報』第162号, 總務省郵政研究所, 2002. 3., 59-60頁).

53) Stephen Lumpkin, “Risks in Financial Group Structures”, *OECD Journal: Financial Market Trends*, 2011, p. 121.

서나 보험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영역의 보험종목을 취급할 필요가 생기는 등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하나의 보험회사가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모든 종목이 취급되었을 때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가능한지, 보험계약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었고, 결국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폐지되지 않았다. 영국은 1979년 제1생명보험지침을 통해, 일반보험업과 장기보험업이 분리되기 전에 이미 겸영했던 보험회사는 계속하여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분리회계, 분리경영, 자산의 분리사용 등을 통하여 각 보험영역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두었다. EU의 제2지급여력지침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겸영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으로 구성된 보험그룹에 상응하는 자본요건이 적용되도록 하며(제2지급여력지침 (44)), 생명보험업과 상해·질병보험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는 각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하고 생명보험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에 따르도록 한다(제2지급여력지침 제73조 제3항).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보면 생손보겸영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영역과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리스크, 보험회사가 갖추어야 할 재무건전성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V. 보험회사 지배구조와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의 관계

1. 개관

금융업 겸업 방식은 하나의 금융회사 내에서 상이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방식으로 다른 금융업을 겸영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하나의 보험회사 내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주회사 체계 내에서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생존보겸영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떠한 겸업형태에서도 생존보 사이에 위험 전이 방지, 이해상충 문제 등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의 기본 취지는 지켜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생존보겸영금지원칙에 대하여 검토하며, 현행 금융지주회사 체계를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2. 금융지주회사의 의의와 지주회사의 기능

(1) 금융지주회사의 의의

금융지주회사란,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와 합하여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②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고 ③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만 가능하다(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사업지주회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한,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3, 제6호의2). 즉, 보험지주회사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이다. 보험지주회사도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특히, 보험지주회사는 보험업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지주회사는 금융업 겸업을 통한 대형화가 가능하다.

(2) 지주회사의 기능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지주회사를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대형회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금융시장에 영향력과 정보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특정 사업부분에 진출하는 것이 쉽고, 실적이 좋지 못한 자회사는 지분매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가 자회사를 통해 수행되므로 자회사 업무영역을 융합한 복합 상품의 개발이 수월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사이에서 금융거래정보, 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참조), 전산시스템, 브랜드 등을 공유하여 상호협조나 제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상품을 교차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경영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신용공여, 출자 등을 제한하는 차단벽(fire-wall)을 설치하여 자회사의 위험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risk contagion)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를 전제로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하여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지주회사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라는 체계상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 경영지원 등 회사 경영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지주회사는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다수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에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고 지주회사의 경영권이 남용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차단벽(fire wall)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한 개 자회사가 가진 리스크가 지주회사로 전이되고 이러한 리스크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그룹 내 금융투자부문 자회사 AIGFP의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전이되면서, 결국 AIG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의 행위 규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 사이, 또는 자회사 등 사이에 내부 거래가 있을 경우, 서로에게 위험이 전이될 수 있고 경영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5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

54)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의 내용

	원칙	예외
<신용공여 제한> 제48조 ①		
1호	자회사 등이 자신이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2호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의 주식소유 금지	가목. 해당 자회사 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소유 나목.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소유
3호	해당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대통령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 신용공여
<자회사 사이에 신용공여 시 적정담보 확보 의무> 제48조 ②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사이에 신용공여 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적정담보 확보	자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량자산 거래 제한> 제48조 ③		
③	은행, 보험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은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 매입 금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사이에 또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 매매금지. 다만, 자회사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소유 제한 관련> 제48조 ⑤, ⑦		
⑤	자회사 등의 해당 금융지주회사 주식소유 금지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또는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취득
⑦	자회사 등이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의 주식소유 시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용지주회사법 상 규제는 보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와 자회사의 거래제한에 적용되는 규제와 비교할 수 있다.

(1) 보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회사등 사이의 행위규제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내부거래제한 규정인 ①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②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같은 항 제3호), ③ 자회사 등 사이에 신용공여 시 적정 담보확보 의무(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2항)를 적용하지 않는다(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제2항).

다만, ① 대주주 등에 대한 거액 신용공여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취득에 대한 절차적 규제(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는 보험지주회사에도 적용되고, ②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이 보험지주회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③ 자회사 등이 보험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 사이에서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보험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 또는 매매, 신용공여하는 것은 금지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제3항). 또한, ④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금융자회사 등에 대한 입점검사를 할 수 있고(금융지주회사법 제37조), ⑤ 자회사 등 사이에서 경영위험이 이전되거나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 등 사이에 업무위탁을 제한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2) 보험업법 상 보험회사와 자회사의 거래제한과의 비교⁵⁵⁾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보험업법 제116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즉, ① 자회사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산

55) 보험업법 상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18호).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보유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을 양도하거나, ②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등을 하는 행위, ③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④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없다. 또한, 자회사를 지배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회사의 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대주주, 주요주주를 의미하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과 비교하여 보면, 보험업법은 자기자본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자회사에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므로, 특히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보다 크다면 금융지주회사법 보다 허용범위가 확대된 결과를 낳는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가 아닌 한 적정한 담보가 없어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 사이에 위험전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⁵⁶⁾ 참고로 독일보험감독법은 그룹 전체 신용공여의 10% 이상을 동일한 투자대상에 집중되면, 리스크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⁵⁷⁾

4. 검토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보험회사 내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않도록 하는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6) 정재욱/이석호,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9, 166쪽.

57) 한정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현황과 법제개선방안”, 「경제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0, 149쪽.

그러나, 여전히 지주회사방식에 있어서도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위험전이, 이해상충위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내겸영과 차이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금융그룹은 지주회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사내겸영방식을 채택하여 온 유럽에서도 지주회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of 1933) 이래로 은행과 증권의 겸영을 막는 기관별 분리체제를 시행하여,⁵⁸⁾ 법인격을 분리한다는 전제로 위험전이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제를 두어 금융업 겸업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등은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는데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전이, 이해상충위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방지 체계를 두고 있다. 즉,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 사이에서 ① 위험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 위탁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② 주식소유제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③ 불량자산매입과 매매제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3항), ④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 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7항) 등을 통해서 자회사 경영위험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이 손해보험회사에 전용될 위험을 막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회사 감독요건에 따라, 보험회사는 ⑤ 자회사의 자산운용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보험업법 제1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⑥ 보험회사와 자회사가 거래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보험업법 제116조), ⑦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다(보험업법 제117조).

한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지주회사체계 내에서 자회사와 손자회사 관계에 있으면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① 보험지주회사 자회사의 임직원은 손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1호), ②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한 금융업 또는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위탁으로 업무 집중이 가능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1항). 또한, ③ 공동광고를 하거나

58) 김홍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52쪽.

전산시스템,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공동사용(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④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이러한 점에서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에 업무영역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면서도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겸영 이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도 생존보겸영을 허용할지에 대한 긴 논의 끝에 지주회사체제를 허용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5. 입법적 개선방안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인 자회사의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면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기목),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자회사는 생명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한다(같은 호 나목). 이는 근본적으로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생명보험회사 또는 상대 보험회사의 주식을 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에서 소유하고 있거나(보험업법 제109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험업법 제2조 제18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인 그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는 상대 보험회사인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해석

되므로 15% 이내에 취득한 주식 또는 1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보험지주회사가 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허용되던 겸영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정되지 않고 업무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⁵⁹⁾

(2) 입법적 개선방안

보험지주회사의 보험회사인 자회사가 자신의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기목, 나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보험회사 등의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보험업법 제109조),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보험회사의 주식을 15% 초과 취득하여,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보험업법 제115조)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무시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⁶⁰⁾

이에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보험회사 또는 비금융회사의 지배에 관여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도록 하고,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생존보겸영금지원칙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인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를 금지하였다면 그 자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손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보험지주회사 외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금지(제48조 제1항 제1호)와 자회사 등의 같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제한(제48조 제1항 제3호), 담

59) 지광운, 앞의 책, 41쪽.

60) 개별적인 금융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일치하지 않고 전혀 성격이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를 하나의 법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별 금융지주회사는 미국, 일본과 같이 개별 금융업법에서 정하여, 은행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법규와 보험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법규는 그 체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을 막아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광운, 위의 책, 246-248쪽).

보확보 규정(제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데(법 제36조 제2항), 보험회사인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배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거래제한규정을 보험지주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통하여 보험지주회사 시스템 내 자회사 등 사이에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거래를 막고 보험계약 관련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금융지주회사법 개선방안

현행	개정안 제안
<p>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p> <p>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p> <p>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는 회사를 제외한다)</p> <p>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p> <p>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p> <p>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p> <p>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p>	<p>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p> <p>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p> <p>1. (삭제)</p> <p>2. (좌동)</p> <p>3. (삭제)</p>
<p>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p> <p>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p>	<p>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p> <p>① 좌동</p>

현행	개정안 제안
<p>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삭제)</p> <p>③(좌동)</p>

VI. 결 론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은 하나의 보험회사 내부에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보험업법에서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정한 이유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겸영으로 인하여 하나의 보험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보험으로 전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파산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즉, 상이한 위험 영역을 하나의 보험회사가 한꺼번에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생존보검영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생존보검영금지를 능가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관한 해외 주요국은 각국의 보험업 수행 관련 법령에서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을 명시하거나,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은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는다. 과거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험회사의 대형화, 검영화를 추구하면서 생존보검영금지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별 리스크 관리 대책,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계약자간 이해상충문제, 계약자 보호조치 등에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바 있다. 특히, 위 국가에서의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취급은 우리나라와 다른데, 대부분 나라는 손해보험종목 중 하나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명시하면서,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종목에 명시하여 취급하며, 생명보험회사는 업무부수성에 근거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 영국, EU 등). 독일은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독립하여 질병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있다. 즉,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취급에도 준수되고 있으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취급함을 이유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고유한 영역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금융겸업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은 여전히 보험업의 근간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험법리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생존보검영금지원칙을 둘러싼 생존보 업계의 논란을 고려하여 볼 때,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면서도 생존보 겸업화를 통한 효용성을 거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겸업 형태 중 지주회사 방식을 통한 생존보 검영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체계 내에서 자회사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를 두는 것은 생존보검영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관계에서 임원 겸직, 업무위탁, 고객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복합 상품 개발, 종합적인 보험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은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의 거래로 인한 이해상충, 위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규정(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을 삭제하여 보험지주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보험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규정(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제2항)을 삭제하여 보험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생손보겸영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 업무 수행을 둘러싼 쟁점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살펴보아야 할 여러 가지 논점들이 여전히 산재하다. 앞으로도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보험제도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강병호/김대식/박경서, 「금융기관론」(제21개정판), 박영사, 2016.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법 해설」, 금융감독원, 2003.

_____,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해설서」, 금융감독원, 2017.

_____, 「퇴직연금 가이드북」, 금융감독원, 2018.

김문희, 「금융법론」, 위즈프레스, 2007.

노상봉/홍범식, 「1995년 개정 보험업법 축조해설」, 매일경제신문사, 1995.

박세민, 「보험법」(제4판), 박영사, 2017.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60년사 총론편」, 생명보험협회, 2010.

생명보험협회 편,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교재(2020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생명보험협회, 2019.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개정 제2판), 도서출판 두남, 2015.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오창수/김경희, 「생명보험론」, 박영사, 1998.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제9판), 박영사, 2015.

장경환/유주선/최병규/김은경 역, 「독일 보험감독법(VAG)」, 법무부, 2016.

정경영, 「주식 금융법(Ⅱ) [보험업법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정동윤(대표집필), 「주식상법[보험(Ⅰ)]」(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정찬형/최동준/김용재,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 2009.

정채웅, 「보험업법 해설」, 진한엠앤비, 2017.

조규창, 「비교법(상)」, 소화, 2005.

지광운, 「보험지주회사의 법리 : 운영 및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12.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제10판), 삼영사, 2016.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18.

한기정, 「보험법」(제2판), 박영사, 2018.

<학술논문>

강경훈/여은정, “금융권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금융연구」 제2014-3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김신정, “보험업법상 겸영금지원칙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김흥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 글로 벌 비즈니스 법학연구」제1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맹수석,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 「기업법연구」제24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0.

성희환, “금융규제에 대한 법정정책학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손상호, “금융업무의 특성과 겸업화 방향”, 「금융조사보고서」 제2005-1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5.

_____, “금주의 논단 :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제15권 제3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송상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BOK 이슈노트」No. 2012-5, 한국은행, 2012.

송옥렬, “금융그룹에서 법인격과 자기자본규제의 의미”, 「금융연구」제2010-10호, 한국금융연구원, 2010.

이효경, “일본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법적 과제”, 「경제법연구」제13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4.

장경환(연구책임자)외 7인, “보험산업구조 선진화에 관한 연구”, 「생명보험협회 연구용역보고서」, 생명보험협회, 2012.

정재욱/이석호,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9.

정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겸업화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지호준/정교설, “금융겸업주의는 전업주의보다 우월한가”, 『경영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경영학회, 1998.

한정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현황과 법제개선방안”, 『경제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0.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개요 및 기금형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2016. 9. 2.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8. 4. 22. 보도자료

2. 외국문헌

<단행본>

John Lowry/Philip Rawlings/Robert Merkin, *Insurance Law: Doctrines and Principles*, Hart, 2011.

Society of Actuaries, *Record of Society of Actuaries - All Lines Insurance Operations*, Vol. 3. No. 1., Society of Actuaries, 1977.

<학술논문>

Paul Sharma, “Prudential Supervision of Insurance Undertakings”, *Report*, Conference of the Insurance Supervisory Servic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02.

Stephen Lumpkin, “Risks in Financial Group Structures”, *OECD Journal: Financial Market Trends*, 2011.

町田七重, “生命保険と損害保険の融合化と今後の課題”, 『郵政研究所月報』 第162号, 總務省郵政研究所, 2002.

3. 인터넷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소개 <<http://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세계법령원문검색 <<https://fr.wikisource.org/wiki/Wikisource:Accueil>>

FINE(금융소비자정보포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연금저축 개요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insurance-and-pensions/risk-management-and-supervision-insurance-companies-solvency-2_en; https://ec.europa.eu/info/law/risk-management-and-supervision-insurance-companies-solvency-2-directive-2009-138-ec/repealed-and-amended-laws_en>

<Abstract>

A brief study on Principles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Ko, Eun Hee*

An insurance company conducts business by underwriting and carrying on life and non-life insurance contracts. In terms of issues surrounding business areas, whether an insurer can conduct both business internally becomes an issue as much as a financial company conducting other fields of finance (ie. universal banking). There are essential differences on risks guaranteed from life and non-life insurance, hence those risks occurred from underwriting contracts are also different. In this respect, there are bigger problems such as risk contagion and possible company default, rather than economic benefits from underwriting both life and non-life contracts. The principle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separation principle' hereafter) are designed to prevent abovementioned risks as well as to protect policyholders. The Republic of Korea initially stated the separation principle at Article 10 of 1962 Insurance Business Law enactment.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made som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from national policy needs or consents from both life- and non-life industries and there has been disputes on whether to expand exceptions in additions to current ones. The separation principle prohibits an insurance company conducting both life and non-life lines within the same firm, so a holding company owning life and non-life insurer as subsidiary dose not violate the separation principle. Therefore, holding company type can serve as a method to enhance benefits of conducting both life and non-life insurance by developing consolid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products,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 To enhance the holding company

* Lawyer, Ph. D.

type, it is necessary to review revisions on some provisions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This study covered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based on reviews on theories as well as comparative approach to overseas legislations. It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legislations.

Key Words : Principle of separating life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Universal banking, Regulation on scope of financial business, Life insurance business, Non-life insurance business, Type 3 insurance business, Business scope of life- and non-life insurance, Financial holding company, Insurance holding company.